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문제 1】 가맹본부 A(이하 “A”)와 가맹점사업자 B(이하 “B”)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편의점을 기준으로 200m 이내에는 A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였고, B는 2019년 7월 15일 A와 가맹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B의 편의점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2019년 5월 20일부터 5천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에 A는 아파트 단지 내 신설 상가에 직영 편의점 한 곳을 개설하였고, 그 직영 편의점은 B의 편의점으로부터 100m 거리에 있다.

한편 201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자, B는 A의 직영 편의점 개설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서면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를 이유로 A는 B의 편의점에 인기 신상품의 공급을 제한하였다. (50점)

물음 1) A의 직영점 설치행위와 신상품 공급제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B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가맹본부 A(이하 “A”)는 가맹점사업자 B에게 해당 점포 인테리어의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A가 지정한 C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설명하시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논하지 말 것) (25점)

【문제 3】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시효에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의 의무 및 조정조서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25점)